

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

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『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』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

□ 추진배경 및 근거

○ 추진배경

- (노후 시설개선)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
- (안전취약 해소)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
- (보행안전 확보) 단지내 도로의 교통시설 실태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

○ 추진근거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(관리비용 등의 지원)
-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1조 및 제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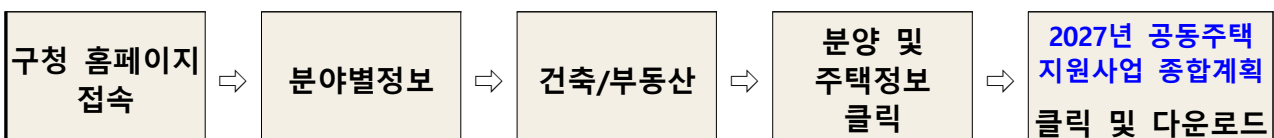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 : 3개 사업 / 777백만원(시비20, 구비757)

○ 사업분야별 예산

- 『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』 722백만원(구비)
- 『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』 40백만원(시20, 구20)
- 『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』 15백만원(구비)

○ 공고 및 사업 홍보

- 구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자료 다운로드 안내
- 사업 추진시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물 배부, 언론보도 등 실시



□ 세부 사업계획

①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

- (법적근거)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
- (사업기간) '26. 9. ~ '27. 11.
- (지원대상) '27. 1. 1. 기준 사용검사(승인)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(355개 단지) ※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 제외
- (소요예산) 722백만원 정도(구비)
- 지원금액

세 대 수	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	지원 상한액 (5년간 보조금 누계, 부가세 포함)
19세대 이하	80% 이하	10,000천원
20세대 이상~150세대 이하	80% 이하	30,000천원
150세대 초과~500세대 이하	70% 이하	40,000천원
500세대 초과~1,000세대 이하	60% 이하	60,000천원
1,000세대 초과	50% 이하	80,000천원

○ 지원조건

- 세대수별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차등 지급
 - 당해연도 포함 5년간('23년 ~ '27년)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,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 - 총사업비 300만원(부가세포함)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
 - 총사업비 중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 지원
- * 최대 지원신청 가능 금액 산정 : [붙임] 세부추진계획(1) 산정예시 참조

○ 선정방법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* 심의·의결로 선정
- * 위원장(부구청장), 위원(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)
- 사업 신청서의 적정성,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 심의
-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 발생 시, 후순위 중 추가 지원단지 선정

○ 추진일정

- '26. 9월 :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

- '26. 10월 : 홍보 및 신청·접수
- '26. 11월 :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
- '27. 1월 :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, 지원단지 선정
- '27. 2월 : 사업 착공 및 시행
- '27. 11월 : 사업 완료 및 정산

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

- (법적근거)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
- (사업기간) '26. 12. ~ '27. 9.
- (지원대상) '27. 1. 1.기준 사용점사(승인)일로부터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*(182개 단지)
 - *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 소규모 공동주택
- (소요예산) 40백만원(시비 20, 구비 20)
- (지원내용)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(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) 업무에 대하여 위탁업체* 선정 및 비용 전액 지원
 - * 국토안전관리원, 주택관리사협회, 주택관리공단 중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
- 선정기준 :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되,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순위로 함
- 결과조치 : 안전관리보고서 제공,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
③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

- (법적근거) 「교통안전법」 제57조의3(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)
- (사업기간) '26. 12. ~ '27. 9.
- (지원대상)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*(114개 단지), 최근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
 - *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
- (소요예산) 15백만원(구비)
- (지원내용)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비용 전액을 지원
- (위탁업체) 한국교통안전공단(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48조의2제4항)

○ 추진일정

- '26. 12월 : 사업 시행공고
- '27. 1월 : 홍보 및 신청·접수
- '27. 3월 : 현장조사, 자체평가 후 지원단지 선정
- '27. 6월 : 위탁업체 선정 및 시행
- '27. 9월 : 사업 완료

- 붙임 1.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3부
2. 지원사업 서식 1부
3.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1부. 끝.